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29일, 이수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8.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11.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5. 11. 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수진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응급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2024년 기준 50.8%에 이르는 등 인구 분포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별 의사 수와 같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격차 또한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보건의료의 공급과 의료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민이 보건의료에 있어 지역 등의 이유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 제11조제1항 및 제36조제3항¹⁾을 통해 선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도 제시되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 없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사회적 신분”을 “사회적 신분, 거주지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u>사회적 신분</u>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 ----- ----- <u>사회적 신분, 거주지역</u> ----- ----- ----- ----- ----- -----.-----.